

상황 판단 영역

1. 현재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대륙별 최종예선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 진출 방식>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국가는 총 32개국이다.)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 진출 방식>

대륙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 진출 방식
아프리카	10개(A~J)조 각 1위 국가 간 플레이오프를 치름.
아시아	A조(5개국)와 B조(5개국) 각 2위까지 자동 진출하고, 각 조 3위 간 경기에서 승리한 국가가 남아메리카 5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름.
유럽	9개(A~I)조 각 1위는 자동 진출하고, 각 조 2위 중 승점이 높은 8개 국가 간 플레이오프를 치름.
북중아메리카	최종 라운드에 올라온 6개 국가가 조별리그를 치른 후 3위까지 자동 진출하고, 4위는 오세아니아 1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름.
오세아니아	최종 라운드에 올라온 4개 국가가 조별리그를 치른 후 1위가 북중아메리카 4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름.
남아메리카	9개 국가(아르헨티나 제외)가 조별리그를 치른 후 4위까지 자동 진출하고, 5위는 아시아 각 조 3위 간 경기에서 승리한 국가와 플레이오프를 치름.
개최국 (아르헨티나)	예선을 치르지 않고 본선에 자동 진출.

※ ‘플레이오프’란 두 팀 간 한 번의 경기를 치러 승리하는 국가가 바로 줄다리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을 의미함.

— <보 기> —

- ㄱ.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은 시점에서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국가수가 불확정적인 대륙은 아시아, 북중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이다.
- ㄴ.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남아메리카 국가는 4~5개국이다.
- ㄷ.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아시아와 북중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수를 합하면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유럽 국가보다 적지 않다.
- ㄹ. 플레이오프에서 오세아니아 국가가 승리한다면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북중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의 합은 2020년 세계 줄다리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합보다 적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ㄷ, ㄹ

2. 다음 글에 근거할 때, 표준 언어 예절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를 먼저 소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는 표준 언어 예절상의 원칙이 있다.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손아래 사람을 순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하며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섞여 있을 때에는 상기 원칙을 차례대로 적용한다. 한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부모님의 성함을 빌려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자기를 잘 모르는 부모님 친구에게 “제 아버님이 길(吉)자 동(童)자 쓰십니다.”와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자(字)’는 그 글자를 쓰는 대상을 높이는 뜻이 있다.

가정에서 존칭의 조사 ‘께서’, ‘께’는 대화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용언의 ‘-시-’로도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듯이 존대해야 할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께서’나 ‘께’ 등으로 높여야 한다.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대상을 높이는 말 역시 잘 가려서 써야 한다. ‘주다’ 대신 ‘드리다’를 쓰는 이유는 물건을 받는 부사어 대상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는 높임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가족 내에서만은 압존(壓尊)이라 하여 부모를 그보다 더 상위자, 예컨대 조부모에게 낮추어 말할 수도 있고 높여 말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직급이 같거나 낮은 사람에게도 높임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청자가 지칭 대상보다 윗 사람이거나 듣는 사람이 회사 밖의 사람인 경우 그 대상에 대해 말할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교육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에서의 압존은 표준 언어 예절로 인정하기 어렵다.

혹 화자가 말을 듣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포함된 대상을 높이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설사 자기 자식에게라도 “이 아버지가 잘 보살펴 주실 테니 너는 네 할 일만 잘하면 된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언어 예절상 성립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낮춤말을 써야 한다. 가령 자신의 본관을 밝힐 때에도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와 같이 말하지 않고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와 같이 말한다. ‘가(哥)’는 전통적으로 낮춤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 <보 기> —

- ㄱ. (사원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김민경 과장에 대해 사장에게 말할 때)
사장님, 김 과장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 ㄴ. (부장이 자신보다 아래 직급의 남윤혜 대리에게 대해 평사원인 김영희에게 물을 때)
김영희 씨, 남 대리님 어디 가셨어요?
- ㄷ. (자기의 어머니와 선생님을 서로 소개시킬 때)
어머니, 이분은 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이분이 제 어머니 이십니다.
- ㄹ. (동네 어른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아버지께서 이 편지를 어르신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 ㅁ. (동네 어른에게 그 분의 딸에 대해 말할 때)
초등학생 아이가 저한테 여쭙 보는 질문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년 경기도 안성시에 15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약을 받은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다음 규정과 <표 1>의 배점기준에 근거할 때 다음의 평형별 청약자 중 평형대별로 선정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묶인 것은? (단, 2011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며 안성시의 연접지역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지역은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이다.)

제00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1. 제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국민임대주택 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1.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 국민임대주택 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1.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④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표 1> 배점기준

Table with 6 columns: 구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거주기간, 직계존속 부양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Rows show points for different age and family size categories.

<표 2> 공급평형대별 청약 현황

Table with 6 columns: 구분, 일반청약 신청자 (명), 전체 공급물량 (호), 순위별 신청자(명) [1순위, 2순위, 3순위]. Rows show application status for different housing types.

<표 3> 청약자 인적사항

Table with 6 columns: 구분, 청약자, 월평균 소득 (만원), 거주지역 (시), 자녀수 (미성년자녀수), 세대주 나이 (세). Rows list applicant details for different housing types.

- ① A, D, H
② B, E, I
③ B, F, G
④ C, D, G
⑤ C, E, I

4. 다음 글은 동물에 대한 3가지 입장이다. 다음 글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민법」상 동물이 물건의 한 유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민법」에 따르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고, 물건을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나) 19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외국에서는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n)”라는 조문을 둬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 인간 이외의 동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스포츠나 영리를 위하여 동물을 수렵하거나 밧에 걸리게 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이익이 동물이 받게 되는 고통을 상회할 때에는 나쁜 것은 아니다.

<보 기>

ㄱ. 동물실험에 적용되는 방법과 복용량은 인간이 처한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으며, 인간이 가진 질병 3만 가지 가운데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일부 약품은 인간과 동물에게서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어 동물실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A는 동물실험의 유용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한다. A는 (다)의 입장에 있다.

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평생을 같이 보내는 인생의 반려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애완동물에게 자신의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유서를 작성하며 실제로 물려주려고 노력한다. B는 애완동물을 사람과 같이 여기고 사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B는 (나)의 입장에 있다.

ㄷ. C와 같은 철학자는 각 동물 개체가 ‘삶의 주체(subject of a life)’로서 갖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에게는 실험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 감정, 행위 능력, 정체성 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는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C는 (다)의 입장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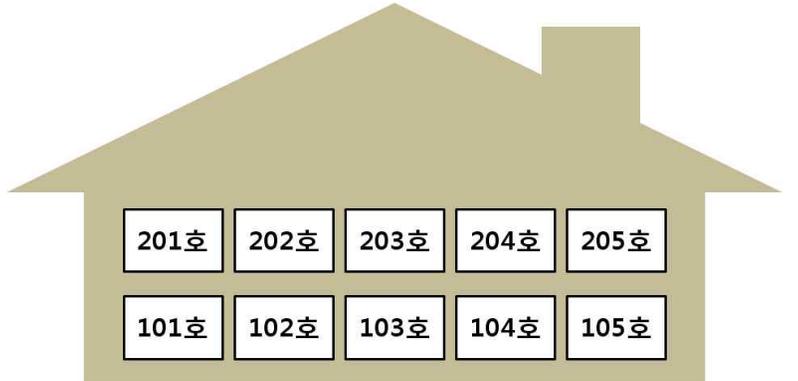
ㄹ. D는 동물은 매매의 대상이 되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無主物)로 하고 사양(飼養)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따라서 누군가의 소유에 속한 동물의 경우 이에 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이를 죽이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D는 (가)의 입장에 있다.

ㄹ. 인간과 동물은 모두 구체적인 부피와 공간을 차지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신체와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이성이 존재한다. 다만, 동물은 신체만이 존재하고 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E는 인간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로 파악한다. E는 (다)의 입장에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5. 다음은 <그림>과 같은 2층 숙소에 7명(A~G)의 손님이 방을 배정 받은 직후 나눈 대화이다. 대화의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음 날 아침 F는 바로 윗방으로 옮겼고, A는 바로 아랫방으로 옮겼다.)

<그림>



A: 내 바로 아랫방은 비었구나. 그리고 우리 층의 양 끝방은 모두 배정받았어.

B: 내 양 옆방은 비었어.

C: 1층은 방 하나를 제외하고 전부 배정받았구나.

D: 나는 끝방이 아니야.

E: 나는 우리 층의 제일 가운데 방을 배정받았어.

F: 나는 G의 옆방이야.

G: 내 바로 윗방을 배정받은 사람이 쿵쿵거리는 바람에 너무 시끄러워.

<보 기>

ㄱ. 202호가 이틀 내내 비어 있을 수는 없다.

ㄴ. 둘째 날에는 2층에 2개, 1층에 1개의 방이 비어있을 것이다.

ㄷ. 첫날 가능한 숙소 배정의 경우의 수는 2가지이다.

ㄹ. 둘째 날 F는 C의 옆방으로 옮겼다.

ㅁ. E는 203호를 배정받았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6. 다음 글과 <표 1>에 근거할 때, <표 2>의 A~F까지의 영화 중 한 국영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국영화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제작사가 단독으로 제작한 영화는 한국영화로 본다.

둘째, 한국 제작사와 외국 제작사의 공동제작영화인 경우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한국영화로 본다.

- ① 한국 제작사와 외국 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 되 그 출자비율이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 제작사의 국적이 2개인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 제작사의 국적이 3개 이상인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 ② <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영화 제작사의 국적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에 따른다.

<표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감독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10점	
주연배우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20점	
조연배우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15점	
주된 촬영장소가 한국인 경우	20점	
대사 사용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20점	
한국적 가치의 표현 정도	상	15점
	중	10점
	하	5점

<표 2> 각 영화에 대한 정보

영 화	제작사	출자 비율 (%)	감독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대사 사용 언어	주된 촬영 장소	한국적 가치 표현 정도
A	드림 타임	20 80	김웅	제리윤	수지	한국어	북경	하
B	드림 타임 머니	10 40 50	황룡	제임스	니콜	중국어	서울	상
C	드림 타임 머니	100	GD	수지	니콜	영어	뉴욕	하
D	드림 타임 머니	30 70	황룡	제리윤	꽃님	한국어	서울	상
E	드림 타임 머니	15 45 40	황룡	꽃님	장진	한국어	뉴욕	중
F	드림 타임 머니	75 25	김웅	꽃님	제리윤	영어	서울	상

- ※ 각 영화의 주연배우 및 조연배우는 각 1명임.
 ※ 제작사의 주된 사업소 소재지: 드림(한국), 타임(중국), 머니(미국)
 ※ 감독의 국적: 황룡(한국), 김웅(중국), GD(미국)
 ※ 배우의 국적: 제리윤·꽃님(한국), 장진·니콜(중국), 제임스·수지(미국)
 ※ 주된 촬영장소: 서울(한국), 북경(중국), 뉴욕(미국)

- ① A-B-C ② A-D-F
 ③ B-C-E ④ C-D-E
 ⑤ C-E-F

7. A, B, C, D 4명이 <메뉴>의 밥, 국, 고기, 김치, 나물을 다음 <조건>에 따라 먹으려고 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메뉴>

- 밥: 콩밥, 백미밥, 흑미밥, 잡곡밥
- 국: 된장국, 콩나물국, 김치국, 미역국
- 고기: 돼지보쌈, 닭볶음탕, 소불고기, 훈제오리
- 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동치미, 배추김치
- 나물: 취나물, 고사리나물, 무나물, 시금치나물

<조건>

1. 각 사람은 밥, 국, 고기, 김치, 나물을 각각 한 종류씩 먹는다.
2. 각 사람은 서로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3. 미역국을 먹는 사람은 백미밥 또는 잡곡밥을 먹을 수 없다.
4. 된장국을 먹는 사람은 콩밥 또는 백미밥을 먹을 수 없다.
5. 백미밥을 먹는 사람은 열무김치를 먹는다.
6. 시금치나물을 먹는 사람은 닭볶음탕 또는 돼지보쌈을 먹을 수 없다.
7. 콩밥을 먹는 사람은 고사리나물을 먹는다.
8. 총각김치를 먹는 사람은 시금치나물을 먹는다.
9. 돼지보쌈을 먹는 사람은 콩나물국과 고사리나물을 먹을 수 없다.
10. A는 흑미밥을 먹고, B는 열무김치를 먹고, C는 시금치나물을 먹고, D는 김치국을 먹는다.

<보기>

- ㄱ. 잡곡밥을 먹는 사람은 총각김치를 먹는다.
- ㄴ. 닭볶음탕을 먹는 사람은 무나물을 먹는다.
- ㄷ. 만약 동치미를 먹는 사람이 무나물을 먹는다면, 닭볶음탕을 먹는 사람이 취나물을 먹을 확률은 50%이다.
- ㄹ. 콩밥을 먹는 사람은 돼지보쌈을 먹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8. 다음 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조건(A~D)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동일한 조건을 위배한 것끼리 묶은 것을 고르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고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상황 속에서 결정의 절차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조건: 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제시된 정책대안을 상호간에 자유롭게 비판하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결정절차의 여러 지점에서 부적절한 추론을 지적하도록 함으로써 적당하지 않은 방안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이 허용됨으로써 어떤 정책대안에 숨어있을 수 있는 독단과 편견을 여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조건: 정책결정 절차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내용이 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 토론이 무력해지고 객관적 증거나 논리 대신 강압이나 회유 등의 방법으로 결론이 도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C조건: 결정과정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문제상황이란 어느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참여자들의 지위,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타당한 주장이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D조건: 해결하려는 문제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절차가 모든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절차들이 똑같이 유효하다고도 할 수 없다. 문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절차들의 유효성이 다르다면 보다 적절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 기>

- ㄱ.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정책문제든 모든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다루어져야만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 ㄴ. 시간이 촉박하니 회의 참석자 중에서 팀장급 이상만 발언하도록 합시다.
- ㄷ. 오늘 논의하는 안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비참석자에게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을 계획이니 회의자료 및 메모한 것은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 ㄹ. 오늘 안건은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회의 참여자들이 감정적으로 극히 격앙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방에 대한 반론은 자제해주시고 자신의 주장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ㅁ. 심의에 참여한 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오늘 회의의 결론만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ㅂ. 우리가 외부에 자문을 구한 박사님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니 참석자 간 별도의 토론 없이 박사님의 답변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합시다.

- ① ㄱ, ㄴ ② ㄱ, ㅁ
- ③ ㄴ, ㄷ ④ ㄷ, ㅁ
- ⑤ ㄷ, ㅂ

9. 다음 글과 <표>에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그 성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입 대비 성과는 효율성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일한 연구개발 투자로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내느냐, 또는 같은 성과라면 얼마나 적게 투자하느냐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지식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로 구분된다. 지식 창출의 대표적인 성과 지표는 논문이다. 국내 학술지의 논문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심사 과정을 오래 전에 확립하여 학술적 권위를 획득한 국제 학술지, 특히 SCI(Science Citation Index)나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와 같은 등재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성과를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특히 공공부문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는 기술이전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이전 실적이 경제적 성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아래 <표>에는 6개의 연구개발 사업(A~F)에 대해 정부가 조사한 투자 금액 대비 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수행기관 가운데 I은 응용개발 분야 연구기관이고 II는 기초 분야 연구기관이다. 효율성 관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첫째,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을 중단하여 6개 중 4개 사업만 남기도록 한다.

둘째,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연구기관으로 사업을 이관할 수 있다. 논문이 많이 창출되는 연구는 기초 분야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기술이전 실적이 많은 연구는 응용개발 분야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이 경우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최종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각 연구기관은 2개씩의 사업을 수행한다.

<표> 연구개발 사업성과

수행 기관	연구개발 사업	투자비용 (억원)	기술이전 실적 (억원)	SCI 논문 (건수)
I	A	30	10	5
	B	15	5	3
	C	15	10	3
II	D	60	25	15
	E	60	25	12
	F	30	25	6

- ① A는 중단
- ② B는 중단
- ③ C는 I 기관에서 계속 수행
- ④ D는 II 기관에서 계속 수행
- ⑤ F는 II 기관에서 계속 수행

10. 다음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처를 모두 고르면?

—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

- 가.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 다만,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계약직 보수, 일용임금 등은 제외
- 나. 위탁사업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 행사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다. 기타운영비
-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의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 부기관장, 실 국장, 소속기관 기관장 등 비서실의 기본운영경비
 -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한 학교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모든 중앙관서가 자체적으로 내부직원, 타부처직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강사료
 - 시험에 소요되는 출제수당 및 면접수당
 -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다만, 실 국장 명의의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은 반영할 수 없음.
 -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 라. 국내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이전비
 - 유 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그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및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부대비로 편성
- 마. 업무추진비
- 외빈초청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경비
 -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간담회, 체육대회, 중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다만,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은 제외
- 바. 직책수행경비
-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

- 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다만,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국가기관·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직책수행경비는 다음의 기준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유형	월액(천원)
1급	750
2급	650
3급	500
4급	400
5급	150

(후략)

— <보 기> —

- A부처
핀란드의 사회복지부장관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북유럽 선진국의 자문을 구하고자 관련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선진국형 복지시스템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A부처 소속 갑과장(3급)을 위하여 1년 간 62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함.
- B부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구간 철도건설을 위하여 건설현장소장이 소요하는 비용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고, B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 시찰에 필요한 비용 5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함.
- C부처
'과학의 날' 행사개최를 (주)△△에 위탁하고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 전액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참여를 위한 C부처 을실장 및 비서진의 세종시 출장비를 국내여비로 편성함.
- D부처
타부처 소속 병실장을 초청하여 3일 동안 실시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강의수당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하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과 강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1명에 대한 임금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음.
- E부처
소속기관인 ○○교육원 직원에 대하여 E부처를 대표하여 하는 E부처 장관의 축의 및 조의에 소요되는 경비와 2013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문제 출제를 위해 ○○교육원에 소속된 신입 사무관에게 지급할 수당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함.
- F부처
2013년도 예산 재배정에 앞서 집권여당과의 협의에 소요하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2013년 한 해 국회의와의 원활한 업무조정을 위해 F부처에서 국회로 파견된 정국장(2급)의 업무를 위해 780만원의 예산을 직책수행경비로 편성함.

- ① A, B, D
- ② A, D, E
- ③ A, D, F
- ④ B, C, E
- ⑤ B, D, F

※ 다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기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12]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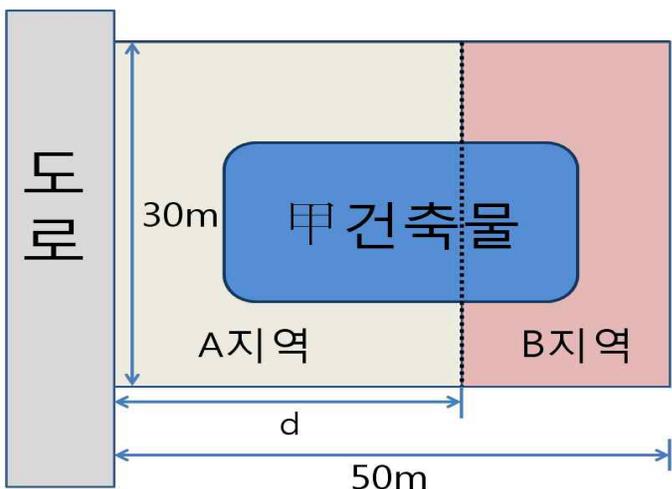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지 안에 면적 330㎡(도로에 인접한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660㎡)이하로 지정된 용도지역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 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적용합니다.

11.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직사각형 대지(가로 50m×세로 30m)가 2개의 용도지역(A지역, B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용도지역은 서로 중첩되어 지정될 수 없다). <그림>과 같이 甲건축물을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서 건축하고자 한다. <용도지역별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에 근거할 때 甲건축물이 해당 규제를 준수한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용도지역별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

용도지역 종류		건폐율	용적률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400퍼센트 이상 1천2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350퍼센트 이상 8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3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이하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5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그림>



* A지역은 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도로와 A지역은 중첩되지 않음

<보 기>

	A지역 종류	B지역 종류	d 길이	甲건축물의 건폐율	甲건축물의 용적률
ㄱ	근린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30m	67퍼센트	650퍼센트
ㄴ	중심상업 지역	유통상업 지역	20m	72퍼센트	380퍼센트
ㄷ	준주거 지역	일반상업 지역	35m	68퍼센트	330퍼센트
ㄹ	일반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	40m	56퍼센트	370퍼센트
ㅁ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5m	49퍼센트	220퍼센트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12.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한다. 빈 칸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로 알맞은 것은?

하나의 대지(전체 면적은 1,320제곱미터)가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도로에 인접한 경우를 가정한다. 단순한 계산을 위하여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제 기준은 각각 300퍼센트, 700퍼센트로 가정한다.

준주거지역의 면적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각각 650제곱미터, 670제곱미터인 경우에서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전체 대지에 A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전체 대지(1,320제곱미터)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연면적은 9,240제곱미터가 된다.

반대로 준주거지역의 면적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각각 670제곱미터, 650제곱미터로 가정해보자. 이번에는 전체 대지에 B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전체 대지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연면적은 C제곱미터가 된다. 고작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줄이거나 늘였는데 건축연면적의 차이가 무려 D제곱미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행 적용 기준을 개정하여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대지에서 각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전체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앞의 예시에서 준주거지역의 면적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각각 650제곱미터, 670제곱미터인 경우 가중평균치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전체 대지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연면적은 6,640제곱미터가 된다.

$$\frac{(650\text{제곱미터} \times 300\text{퍼센트}) + (670\text{제곱미터} \times 700\text{퍼센트})}{1,320\text{제곱미터}} = \text{약 } 503\text{퍼센트}$$

반대로, 준주거지역의 면적과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각각 670제곱미터, 650제곱미터인 경우 가중평균치 용적률을 고려하여 전체 대지에 대하여 허용되는 건축연면적을 구하면 E제곱미터가 되어 방금 구한 6,640제곱미터와의 차이는 F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민간이 용도지역에 관한 유리한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 용적률 = 건축연면적 ÷ 대지면적

	A	B	C	D	E	F
①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960	5,280	6,560	80
②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960	5,280	6,600	40
③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6,600	2,640	6,560	80
④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960	5,280	6,600	40
⑤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600	2,640	6,650	10

13. 다음 글에 근거할 때, 2013년 3월 6일 변제 후 을에게 남아있는 채무와 그 액수는?

갑은 을에게 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을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각 채무에 충당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 ① 제1원칙: 2개 이상의 채무 원금과 그에 딸린 이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의 이자부분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다.
- ② 제2원칙: 각 채무의 원금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채무의 원금에 먼저 충당한다.
- ③ 제3원칙: 각 채무의 원금만 남아 있으며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의 원금 액수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갑은 2009년 11월 7일 을에게 금 1,000만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고(채무A), 2010년 9월 7일 다시 을에게 금 2,000만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채무B), 2011년 7월 7일에 마지막으로 을에게 금 1,000만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채무C). 을은 2012년 5월 6일 금 1,900만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2013년 3월 6일에 다시 1,200만원을 마련하여 갑에게 변제하였다.

※ 이자에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는다(복리가 아닌 단리이다).
 ※ 이자를 계산할 때는 2009년 11월 7일부터 2009년 12월 6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
 ※ 이자가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자가 없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고, 고율의 이자가 붙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저율의 이자가 붙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이익이 된다. 이 외 각 채무에 대한 담보, 변제기 등 다른 조건은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① 채무A: 500만원, 채무B: 700만원
- ② 채무A: 700만원, 채무B: 1,400만원
- ③ 채무A: 1,000만원, 채무B: 1,500만원
- ④ 채무B: 1,400만원, 채무C: 700만원
- ⑤ 채무A: 700만원, 채무B: 1,400만원, 채무C: 200만원

14.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어느 나라에 A와 B의 두 염색업체가 있으며, 각각 연 100만톤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 정부는 염색업체에서 방류되는 연 폐수 배출량을 20% 감축하기 위해 다음의 두 방안을 고려중이다.

(가) 두 염색업체에 폐수 배출량을 각각 연 20만 톤씩 감축하라고 명령한다.

(나) 한 장당 폐수를 1만 톤씩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각 염색업체에 80장씩 배부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게 한다.

단, A염색업체의 폐수감축비용은 1만 톤당 2억 원, B염색업체의 폐수감축비용은 1만 톤당 1억 원이며, 정부는 각 염색업체의 폐수감축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 보 기 >

- ㄱ. (나)가 시행될 경우, B염색업체의 배출권 거래 수입은 40억 원보다 많다.
- ㄴ. (나)는 (가)보다 총 폐수감축비용을 20억 원 더 줄일 수 있다.
- ㄷ. (나)가 시행되면 A염색업체는 폐수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 ㄹ. 만약 두 염색업체의 폐수감축비용이 동일하더라도 정부가 각 염색업체의 폐수감축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가)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총 폐수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총 폐수감축비용은 A의 폐수감축비용과 B의 폐수감축비용의 합이다.
 ※ 각 염색업체는 폐수감축비용과 배출권 거래의 비용·수입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7. 다음은 2013년 3월 15일 22시부터 3월 16일 06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불침번 근무자들이 이날 근무명령서를 보고 말한 내용이다. <표>를 참고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단, 이날 불침번 근무자들은 병장 1명과 상병 2명, 일병 2명, 이병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급은 병장이 가장 높고, 상병, 일병, 이병 순으로 내려가며, 이들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표> 불침번 근무시간

순서	근무시간
1번(초번)	22:00~23:20
2번	23:20~00:40
3번	00:40~02:00
4번	02:00~03:20
5번	03:20~04:40
6번(말번)	04:40~06:00

- ※ 근무시간마다 한 명씩 근무한다.
- ※ 1번(초번)과 6번(말번)에는 이병을 근무시키지 않는다.
- ※ 당직사령 순찰시간은 매일 22시~23시와 04시~06시이다.

갑: 나는 초번과 말번이 아니네.
 을: 내 바로 다음 근무자는 나보다 계급이 높구나.
 병: 내 바로 앞·뒤 근무자는 나보다 계급이 낮네.
 정: 나는 자정에 근무하고 있겠구나.
 무: 당직사령 순찰시간을 피해서 다행이다.
 기: 내가 제일 상급자구나.

- ① 갑의 계급은 알 수 없다.
- ② 을은 이병이다.
- ③ 병은 당직사령 순찰시간에 근무한다.
- ④ 정 바로 다음 근무자는 병이다.
- ⑤ 무는 일병이다.

18. 철수, 준모, 해주, 영희, 국주, 라영, 민서 등 7명의 학생들이 경제학 시험을 치렀는데, 이 학생들은 각기 다른 점수를 받았다. 다음 <정보>에 근거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정 보>

- 철수는 준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준모는 국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
- 국주는 민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
- 해주는 준모와 라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영희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
- 라영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음.

- ① 만일 철수가 해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7명 중 자신의 등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2명이다.
- ② 만일 준모가 라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7명 중 자신의 등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3명이다.
- ③ 국주는 5등 안에 들었다.
- ④ 준모는 4등 안에 들었다.
- ⑤ 해주는 국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국주는 라영보다 높은 점

수를 받았다.

19. 다음 글에 근거할 때 가장 부적절한 가설을 고른 것은?

DNA 분자는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온도에서는 염기 간의 상보결합이 일어나 두 상보 서열을 가진 DNA 분자가 서로 이중가닥을 형성하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그 결합이 끊어지며 각각 단일가닥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DNA의 결합 성질은 그 염기 서열 및 주변 환경에 크게 의존하며,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 ㄱ. A 염기는 T와 결합하고, G 염기는 C와 결합한다.
- ㄴ. 결합한 두 DNA간의 결합 염기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결합이 끊어진다.
- ㄷ. 서로 결합하여 이중가닥을 형성한 DNA분자는 그 결합이 끊어진 후, 각각 단일가닥으로 존재하다 다시 결합할 수 있다.
- ㄹ. 이중가닥 DNA를 포함하는 용액에 녹아있는 염의 농도가 낮을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결합이 끊어진다.
- ㅁ. 특정 염기 서열을 가진 단일가닥 DNA 분자는 상보 서열을 가진 다른 DNA 분자뿐만 아니라, 특정한 생체 분자와도 강한 결합이 가능하다.
- ㅂ. DNA의 양 끝은 5' 과 3' 으로 표시되며, 두 상보 서열을 가진 DNA 분자가 서로 이중가닥을 형성할 때 한 DNA의 5' 과 3' 은 다른 DNA의 3' 과 5' 부분과 결합한다.
- ㅅ.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DNA 분자는 2만개 이상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 ㅇ. 5' ATTGCAAGTATTGACGGGCC 3' 의 염기 서열을 가진 DNA 분자의 이름은 X이며, 이 분자는 특정 유전병 형질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ㅈ. 인체의 염 농도는 0.9%이다.

- ① X와 결합한 5' GGCCCGTCAATACTTGCAAT 3' 의 염기 서열을 가진 DNA(K)는 X와 결합한 5' GGCCCGTCAATACGTGCAAT 3' 의 염기 서열을 가진 DNA(L)보다 높은 온도에서 분리될 것이다.
- ② 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9%의 염 농도를 필요로 하는 이중 가닥 DNA를 인체에 넣으면 이 DNA는 단일가닥으로 분리될 것이다.
- ③ 생체 분자 Y는 X와 결합할 때 발열을 하기 때문에 X와 곧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 ④ 유전병 치료를 위하여 X를 인체 내에 주입하여 사용할 경우, 유전병을 치료하는 기능 이외에도 X 자체의 염기 서열이 인위적인 유전정보를 세포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⑤ 특정한 효소를 이용하면 단일가닥 DNA 분자의 서열 중 나란히 붙어있는 두 개의 A 염기(AA)를 별개의 A와 A로 분리시킬 수 있다. 이 효소가 상보 서열 DNA와 결합하여 이중가닥을 이루고 있는 X에 작용하면 상보 서열 DNA와 X의 결합이 끊어질 수 있으나, 염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결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1. 다음 글에 근거할 때 (나)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 보>

(가)는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한다. (가)가 말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이란 간단히 말하면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나)는 (가)가 이러한 주장을 할 때 대상선정의 보편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대상선정의 보편성이란 A라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B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할 때 욕구 A를 가진 사람은 모두 정책 B의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대상선정의 보편성이 자원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설령 모든 사람이 욕구 A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가진 욕구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욕구의 양이 극히 적거나 스스로 욕구충족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상선정의 보편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주장한다.

(가)가 보편적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정책 대상이 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어져 사회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욕구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욕구의 양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사회구성원을 구분 짓는 결과뿐만 아니라 높은 행정비용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누가 재정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와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가)인지 아니면 (나)인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정책이 보편적인 정책이 되려면 그 정책은 대상선정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의 보편성과 욕구충족의 보편성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가 말하는 재정부담의 보편성이란 정책 B에 필요한 재정을 정책 B의 정책 대상 모두가 동일한 양을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또한 욕구충족의 보편성은 정책 B를 통해 정책 대상이 가진 욕구 A를 충족시킬 때 모든 정책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재정부담의 보편성과 욕구충족의 보편성에 대한 (가)의 입장은 (나)의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 (가)에 있어서 재정부담의 보편성은 정책 B의 정책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재원이 복지정책의 재원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가)는 자신들이 말하는 욕구충족의 보편성은 동일한 양의 욕구충족이 아니라 정책 대상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정 수준을 정한 다음 그 수준까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일한 수준까지의 욕구충족이라고 주장한다.

<보 기>

ㄱ. 무엇을 재원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가에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라는 동일한 현상이 누구에게는 유리한 변화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재정부담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세나 간접

세 보다는 정액의 이용자부담금을 부과하여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ㄴ. 인간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 음식을 필요로 하므로 모든 학생은 급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나타나는 욕구는 사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음식을 살 수 있는 돈, 즉 급식비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학생 가정이 가진 급식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경우 누군가는 낙인감을 느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학생 가정의 경제력을 파악하기 위한 자산조사 없이 실시해야 한다.

ㄷ. 제한된 예산 하에서 절대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자격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 다음, 자신이 받은 급여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우리는 공공부조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정해놓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전자 방식으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비용이 더 들뿐만 아니라 더 큰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정한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욕구충족의 보편성을 모든 정책 대상의 욕구를 일정 기준까지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경우, 일정 수준까지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일정 수준까지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애초에 정책 대상이 가진 욕구의 양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충족의 보편성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면 사람들이 가진 욕구의 양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욕구충족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되어버린다. 어떤 보편성을 논할 때에는 사회구성원을 구분하는 것을 마치 우리의 선택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결과인 것처럼 보고 이를 부정적인 것이라 비판하면서 또 다른 보편성을 이루고자 할 때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2. 다음 글을 읽고 사법판결에 관하여 동일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관은 사법부가 관할권을 보유하는 문제에 관하여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법관은 개인 간의 사소한 쟁송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치행위의 적법성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관할권을 보유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최종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된 최종안으로서의 판결 혹은 결정은 국가권력을 기반으로 집행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행위를 구속하며, 나아가 결정된 분쟁의 내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회구성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설정하게 하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사법부의 판결은 전통적인 법학의 연구영역일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연구대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학 혹은 정책학의 영역에서 법관이 왜, 어떻게 판결에 이르게 되는가에 관한 메카니즘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설정되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통법리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20세기 초반까지의 연구들은 비감정적이며 불편부당한 법관이 객관적 근거로부터 논리적으로 판결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며, 또한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학문진반에 걸쳐 현실주의의 영향력이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법판결에 관한 연구영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판결의 영향요소에 연구의 초점이 설정되어 의사결정권자의 주관적 요소나 상황적 변수들이 판결을 설명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중요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보 기>

갑: 미국 대법원의 Plessy v. Ferguson 판결은 백인 법관과 배심원들이 흑인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인종차별을 합법화시킨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 만일 법관과 배심원들이 백인들에게 반감을 지닌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야.

을: 법의 한자어를 들여다보면 ‘물이 흘러간다’는 의미인 것처럼 법은 시공에 상관없이 영원불변의 것으로 고정되었다기보다 동태적인 사회현실에 맞추어 그 내용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야.

병: 법관을 정책결정자로 파악하더라도 법관은 기존의 판례를 준수해야 하는, 즉 판례에 구속되는 극히 제한된 의미의 정책결정자일 수밖에 없어. 즉, 기계적으로 과거 판례의 내용과 원칙을 현재의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정: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 입법자 혹은 입법부의 입법의도를 통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야.

무: 우리나라에서 최근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원칙과 현실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반증이야.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갑, 을, 정 ④ 갑, 을, 무
 ⑤ 병, 정, 무

23. 다음 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한 기금의 운용을 맡은 책임자가 1,000억 원의 여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책임자는 채권, 주식, 부동산에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단, 채권투자의 연 수익률은 10%이고, 주식의 수익률은 V%가 될 확률이 0.3, 10%가 될 확률이 0.4, -20%가 될 확률이 0.3이며, 부동산투자의 연 수익률은 50%가 될 확률이 a, 10%가 될 확률이 b, -30%가 될 확률이 0.4이다.

<보 기>

- ㄱ. a=0.35이면, 부동산에 전액 투자하는 것이 채권에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 항상 유리하다.
 ㄴ. V=38%이면, 주식에 전액 투자하는 것이 채권에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 항상 유리하다.
 ㄷ. V=30%이고, a=0.3이면 주식에 전액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에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ㄹ. V=40%이고, a=0.4이면 부동산에 400억 원, 주식에 600억 원을 분산투자하는 것이 채권에 700억 원, 주식에 300억 원을 분산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ㄷ, ㄹ

24.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장기 동호회원인 갑, 을, 병 세 사람은 서로 시간이 맞는 두 사람끼리 만나 장기를 두어왔다. 장기 게임은 때로는 무승부가 되기도 하지만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표>는 지금까지 세 사람 간 장기 게임의 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숫자는 지금까지 세로줄의 사람과 가로줄의 사람이 만나서 둔 장기 게임들 중 세로줄의 사람이 승리한 횟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예를 들어, <표>의 30%의 경우 을과 병의 대진에서 을의 승률이 30%라는 것을 의미함).

<표> 장기게임의 승률

구 분	갑	을	병
갑		60%	50%
을	40%		30%
병	40%	60%	

<보 기>

- ㄱ. 갑과 을의 대진수가 20, 갑과 병의 대진수가 20, 을과 병의 대진수가 30인 경우, 병의 총 승률이 갑의 총 승률보다 높다.
 ㄴ. 갑과 을의 대진수가 10, 갑과 병의 대진수가 20, 을과 병의 대진수가 20인 경우, 총 승률은 갑 > 병 > 을의 순서로 높다.
 ㄷ. 동호회원들 중 병은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ㄹ. 갑과 을의 대진수가 30, 갑과 병의 대진수가 10, 을과 병의 대진수가 20인 경우, 총 승수는 갑 > 을 > 병의 순으로 많다.

- ①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5.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소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소멸된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이나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항소란 1심판결에 대한 2심에의 불복을, 상고란 2심판결에 대한 3심에의 불복을 말한다. 그리고 원심법원이란 항소나 상고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
- ※ 위의 항소절차에 관한 설명은 상고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항소(상고)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보 기>

- ㄱ. 만약 2013년 1월 8일 A법원에서 1심판결을 선고받았다면 2013년 1월 14일까지 A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ㄴ. 만약 2013년 1월 8일 A법원에서 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013년 1월 15일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면 A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ㄷ. 만약 2013년 1월 14일 피고인이 A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한 A법원은 2013년 1월 28일까지 A법원의 항소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ㄹ. 만약 피고인이 2013년 2월 4일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았다면 피고인은 2013년 2월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ㅁ. 2013년 3월 4일 피고인(미성년자)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의 부(父)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1일 상고심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는 적법·유효하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26. 다음 <정보>와 <우진, 보람, 명진의 소비상황>에 근거할 때 각 인물이 결제에 사용할 가장 적절한 수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 보>

- 각 개인은 가장 유리한 하나의 신용카드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함.
- 우진, 보람, 명진이 각각 소요 경비 전부를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함.
- 뮤지컬, XX테마파크 및 서점은 모두 B신용카드의 문화 관련업에 해당함.
- 신용카드 1포인트 = 1원, 문화상품권 1매 = 1만원으로 평가함.
- 혜택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액수가 많을수록 유리함.
- 액수가 동일한 경우 할인혜택, 포인트 적립, 문화상품권 지급 순으로 유리함.
- 혜택의 액수 및 혜택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혜택 부여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함(현장할인은 결제 즉시 할인되는 것을 말하며, 청구할인은 카드대금 청구 시 할인되는 것을 말함).

<각종 신용카드의 혜택>

A신용카드	XX테마파크 이용시 본인과 동행 1인의 입장료의 20% 현장 할인(단, 직전 1개월간 A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B신용카드	문화 관련 가맹업 이용시 총액의 10% 청구 할인(단, 할인되는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C신용카드	이용시마다 사용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즉시 적립. 사용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즉시 적립
D신용카드	가입 후 2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도서류(DVD 포함) 구매시 최초 1회에 한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증정(단, 문화상품권은 다음 달 1일에 일괄 증정)

<우진, 보람, 명진의 소비상황>

우진	배우자 및 자녀 2명(9세, 7세)과 함께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하려고 함. 관람요금은 성인 2만원, 15세 미만 청소년 각 1만5천원(직전 1개월간 A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0만원임)
보람	친구 3인과 함께 XX테마파크 관람. 입장료는 1인당 3만원(직전 1개월간 A신용카드 사용금액은 45만원임)
명진	서점에서 여행서적(정가 각 3만원) 3권과 DVD 1매(정가 1만원)를 구입(직전 1개월간 A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만원이며, D신용카드는 가입 후 미사용 상태임)

- ① 명진 - B신용카드
- ② 명진 - D신용카드
- ③ 보람 - A신용카드
- ④ 보람 - B신용카드
- ⑤ 우진 - C신용카드

27. 어느 컨벤션 센터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5개 있으며, 3명의 직원(A, B, C)이 있다. 어느날 5명의 고객(갑, 을, 병, 정, 무)으로부터 회의 공간 예약이 접수되었다. 다음 <정보>에 근거할 때, 3명의 직원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 보>

-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과 수용 인원은 다음과 같다.
 - 101호(100인용), 102호(500인용), 201호(300인용), 202호(200인용), 301호(150인용)
- 각 직원의 공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공간은 배정할 수 없다.
 - A는 남은 공간에서 가장 큰 공간을 먼저 배정한다.
 - B는 신청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중 수용 인원과 신청 인원 간의 차이가 가장 작은 공간을 배정한다.
 - C는 공간리스트 순서(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순으로 정리되어 있음)에서 신청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을 배정한다.
- 예약이 접수된 순서는 갑, 을, 병, 정, 무이며, 각 고객의 신청 인원은 다음과 같다.
 - 갑(180명), 을(450명), 병(250명), 정(100명), 무(80명)

- ① A와 C는 을에게 공간을 할당해 줄 수 없다.
- ② B는 무에게 301호를 할당한다.
- ③ 병은 어느 직원이 공간을 배정하더라도 같은 방을 배정받는다.
- ④ B와 C는 정에게 같은 방을 배정한다.
- ⑤ A와 C는 202호에 같은 고객을 배정한다.

28.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국, B국, C국, D국, E국 등 5개 국가의 연합공격을 받은 甲국은 수도를 방어하여야 한다. 비교적 소수의 군대를 가진 甲국 군대가 이기려면 두 가지 방도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 연합군의 자중지란을 노리는 것으로 A국과 E국이 오랜 숙적이라는 점, D국이 전투참여에 미온적이라는 점 등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종의 특성을 반영한 전술을 펼치는 것이다. 모든 군대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병력의 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하지만 병종의 특성이 개입될 경우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창병은 기병에 강하지만 검병과 궁병에는 취약하다. 기병은 검병에는 강하지만 궁병과 창병에는 취약하다. 궁병은 창병과 기병에는 강하지만 검병에는 취약하다. 한편, 검병은 궁병과 창병에는 강하지만 기병에는 취약하다. 특성을 잘 이용하면 2배의 병력과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병 1,000명은 검병 2,000명까지는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한편, 같은 병종 내에서도 정예부대가 존재한다. 검병은 단검병과 장검병으로 나뉘는데 장검병이 정예부대이다. 창병도 단창병과 장창병으로 나뉘는데 장창병이 정예부대이다. 궁병은 단궁병과 장궁병으로 나뉘는데 장궁병이 정예부대이다. 기병은 검기병과 창기병으로 나뉘는데 양자는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병종에서 정예부대는 비정예부대 2배의 병력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으며, 이러한 정예부대의 특성은 같은 병종끼리의 싸움에

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장검병 1,000명은 단검병 2,000명까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그런데 각 국가는 자신의 영지에서 오랜 훈련 끝에 병종의 한계를 무시하는 특수한 군대를 양성하였다. 예를 들어 A국의 검기병 및 창기병은 궁병과 창병에 맞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B국은 단검병을 특화시켰고, C국은 장궁병을, D국은 장검병을 특화시켰다. 甲국은 단창병과 단궁병을 특화시켰다. 양측이 대군을 동원하여 드디어 서로를 마주한 채 수도 근처에 진을 쳤고, 군세는 아래와 같다.

※ 병종: 검병, 기병 등 군대의 종류

(단위: 천명)

구 분	甲	A	B	C	D	E
단검병	5	2	5	0	0	2
장검병	2	0	0	0	5	0
검기병	3	1	0	1	1	0
창기병	3	1	1	0	1	0
단창병	7	3	2	3	2	0
장창병	5	3	0	0	0	4
단궁병	5	0	0	5	0	2
장궁병	5	0	0	3	0	3

<보 기>

- ㄱ. 甲국이 야심한 밤을 틈타 기동력이 좋은 기병만 이끌고 군세의 규모가 비교적 소수인 D국을 급습한다면 D국을 궤멸시킬 수 있다.
- ㄴ. 정치력이 뛰어난 甲국 참모가 계책을 써서 A국과 E국을 이간질시켜 이들 군대가 자국 영토로 돌아가 버렸다면, 甲국은 궁병만으로 3개 연합군의 창병과 기병을 공격하여 궤멸시킬 수 있다.
- ㄷ. 甲국 참모의 계책으로 D국이 연합군을 배신하고 甲국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D국의 병력만으로 B국을 궤멸시키는 불가능하다.
- ㄹ. 甲국이 단창병만으로 E국의 궁병대를 습격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 ㅁ. 전투 시작과 함께 짙은 안개가 끼어 양 진영의 궁병이 참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甲국이 연합군에 비해 불리해진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9. 다음 법률에 근거할 때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연방국토계획기본법」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계획"이란 국토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국토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으로 구분한다.
2. "국토기본계획"이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국토이용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 "국토이용계획"이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4. "지역클러스터계획"이란 국토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이용계획을 말한다.

5. "사회인프라"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 다. ~ 사. (생략)

6. "사회인프라사업"이란 사회인프라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광역시설"이란 사회인프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8. "국토이용사업"이란 국토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사회인프라사업
- 나. 「도시종합개발법」에 따른 도시종합개발사업
- 다. 「시가지정비법」에 따른 시가지정비사업

「낙후된 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구"란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시가지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도시종합개발법」에 따른 도시종합개발사업
- 다. 「연방국토계획기본법」에 따른 사회인프라사업
- 라. 「지역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역산업조성사업

3. "도시재생구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시가지정비법」

제00조(정의) "시가지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관리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보 기>

- ㄱ. 국토기본계획은 지역클러스터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 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광역시설이다.
- ㄷ. 도시재생구역은 모두 도시재생지구 안에 있다.
- ㄹ. 국토이용사업이 도시재생지구에서 시행되면 모두 도시재생사업이다.
- ㅁ. 지역클러스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계획 수립 대상지역 안에서 녹지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ㅂ. 주택재건축사업이면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된다.

- | |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 ③ ㄱ, ㅁ, ㅂ | ④ ㄴ, ㄹ, ㅁ |
| ⑤ ㄷ, ㄹ, ㅂ | |

30.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알파족과 베타족은 다음 두 단계를 거쳐 감마성에 살고 있는 감마인을 용병으로 확보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알파족과 베타족은 "자기종족이 확보한 감마인의 수에서 상대종족이 확보한 감마인의 수를 뺀 값"이 클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마인은 총 100명이다.

<1단계>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알파족과 베타족은 감마인을 용병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전략 중 하나의 전략만을 사용한다.

- 고용전략: 어느 종족에도 속하지 않은 감마인을 고용하는 전략으로 고용비용이 든다.
 설득전략: 상대 종족에 고용된 감마인을 설득하여 빼앗는 전략으로 설득비용이 든다.

※ 고용비용과 설득비용이란 감마인 1인을 고용하거나 설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2단계>

1단계에서 어느 종족에도 속하지 않은 감마인은 2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알파족 또는 베타족 중 어느 한 종족에 가담하여 전쟁에 참가한다. 감마인이 알파족과 베타족에 가담할 확률은 각각 1/2이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알파족과 베타족은 각각 30명의 감마인을 확보한 상태이고, 40명의 감마인은 아직 어느 종족에도 속하지 않았다. 조만간 전쟁이 시작되려 한다.

<보 기>

- ㄱ. 고용비용과 설득비용이 같고 1단계에서 알파족만 한 명의 감마인을 고용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면, 알파족은 설득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 ㄴ. 고용비용과 설득비용이 각각 5원, 8원이고, 알파족과 베타족 모두 1단계에서 80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1단계에서 두 종족은 모두 고용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 ㄷ. 고용비용과 설득비용이 각각 10원, 20원이고, 베타족만 1단계에서 100원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만약 2단계에서 감마인이 베타족에 가담할 확률이 1/3, 알파족에 가담할 확률이 2/3이라면, 베타족은 설득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 ㄹ. 고용비용과 설득비용이 모두 8원 이상 9원 이하이고, 알파족만 1단계에서 100원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만약 2단계에서 어느 종족에도 속하지 않은 감마인이 베타족에 가담할 확률이 3/4, 알파족에 가담할 확률이 1/4이라면, 알파족은 설득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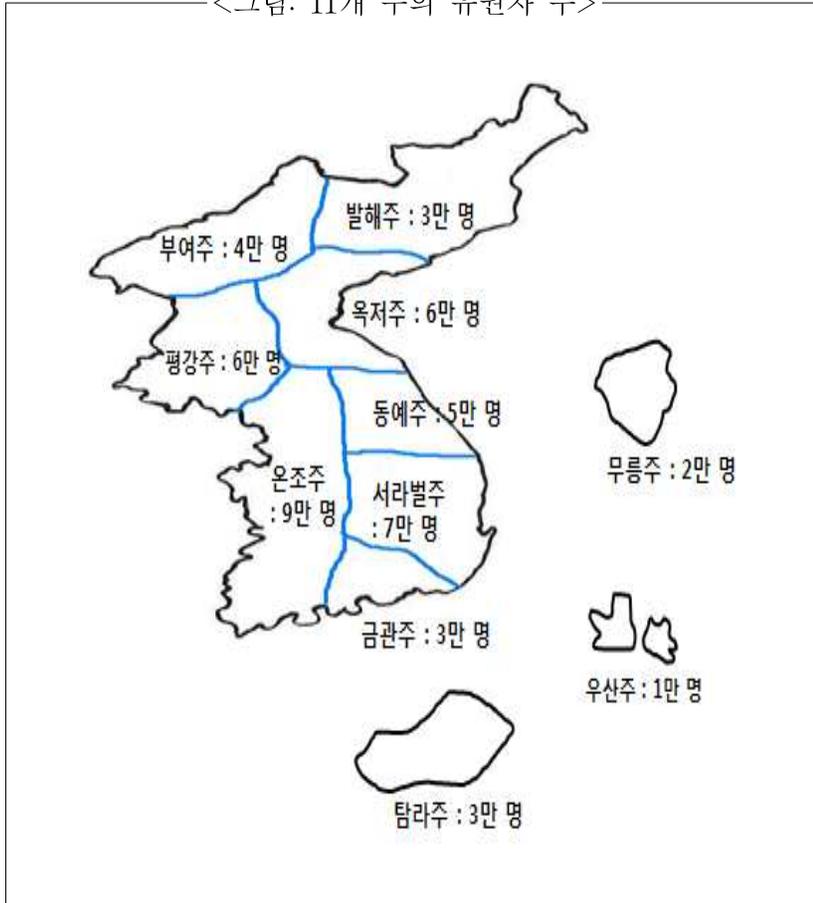
- |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
|--------|--------|--------|--------|--------|

31. 어느 국가에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영의정"을 다음의 <선거방식>으로 뽑는다고 한다. 이 나라 11개 주의 유권자 수는 다음 <그림>과 같고, 무신 후보로 "순신제독", 문신 후보로 "울곡학사"가 추천받았다. 모든 주는 반드시 장군주 또는 선비주가 된다고 가정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선거방식>

- 이 국가에는 "거북선당", "오죽헌당" 두 정당만 존재한다. 영의정을 뽑을 필요가 있을 때, 거북선당은 무신(武臣) 한 명, 오죽헌당은 문신(文臣) 한 명을 추천하여 총 두 명이 영의정 선거 후보자가 된다.
-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백성은 투표권을 가진다. 투표권을 가진 백성(유권자)은 1인 1표의 원칙하에 두 후보 중 한 후보에게만 투표하고, 비밀선거가 보장된다. 유권자는 투표에 불참하거나 무효표를 만들지 않는다.
- 선거를 담당하는 승정원에서는 11개 주에 살고 있는 유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전령사"를 각 주에 배정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무릉주 유권자 수는 우산주 유권자 수의 두 배이므로 무릉주에 배정된 전령사의 수는 우산주에 배정된 전령사의 수의 두 배이다.
- 전국이 아닌 주를 단위로 하여 개표(開票)한다. 유권자로부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자는 그 주에 배정된 전령사를 모두 확보한다.
- 두 후보자가 각 주에서 확보한 전령사의 수를 계산하여 더 많은 전령사를 확보한 후보자가 영의정이 된다.
- 무신 후보자가 문신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주를 "장군주"라 부르고, 반대의 경우는 "선비주"라 부른다.

<그림: 11개 주의 유권자 수>



<보 기>

- 온조주·서라벌주·평강주·금관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가 장군주라면 순신제독은 영의정이 된다.
- 장군주는 발해주·옥저주·동예주·서라벌주·금관주이고, 선비주는 부여주·평강주·온조주인 경우, 나머지 무릉주·우산주·탐라주에서 울곡학사에게 투표한 유권자 수가 30,003명이라면 울곡학사가 영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산술적으로 11개 주에서 울곡학사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수를 모두 더해 13만 명 이하인 경우라도 울곡학사가 영의정이 될 수 있다.
- 전령사를 11개의 주에 살고 있는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지 않고 모든 주에 동수(同數)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행사하는 표의 영향력(가치)이 감소하는 우산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 ㉠ ㄱ, ㄴ
- ㉡ ㄱ, ㄷ
- ㉢ ㄱ, ㄹ
- ㉣ ㄴ, ㄷ
- ㉤ ㄴ, ㄹ

32. 3인의 경리사원 갑, 을, 병이 업무수행에 관한 4개 평가 부문(정확성, 신속성, 책임감, 사회성)에 대하여 각각 우수와 미흡 중 하나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3인의 평가결과는 서로 다르다.
- 각각의 경리사원은 정확성의 평가결과와 신속성의 평가결과가 상반된다.
- 각각의 경리사원은 책임감의 평가결과와 사회성의 평가결과가 동일하다.
- 갑과 을은 4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우수로 평가를 받았다.

<보 기>

- 병이 두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 갑과 병이 4개 평가 분야 모두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 갑, 을, 병 3인이 받을 수 있는 평가결과의 경우의 수는 6가지이다.
- 을과 병이 4개 평가 분야 중 2개 분야에서는 동일하고 2개 분야에서는 상반된 평가를 받을 확률은 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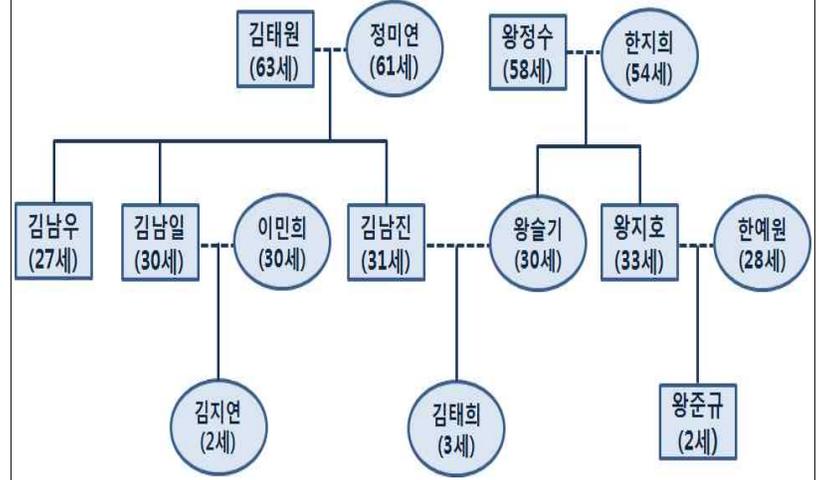
- ㉠ ㄱ, ㄷ
- ㉡ ㄱ, ㄹ
- ㉢ ㄴ, ㄷ
- ㉣ ㄴ, ㄹ
- ㉤ ㄴ, ㄷ, ㄹ

33. 다음 <그림>은 어느 가정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의 표준언어예절에 따라 호칭을 사용할 때 적절한 언어예절을 사용한 것으로만 묶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단, 호칭 이외의 언어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표준언어예절

관계	화자	청자(대상)	호칭
부모와 자녀	자녀	아버지	아버지, 아빠
		어머니	어머니, 엄마
시부모와 며느리	시부모	아들의 배우자	아가, 새아가, (손주이름)어멈 또는 어미
	며느리	배우자의 아버지	아버님
		배우자의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
처부모와 사위	처부모	딸의 배우자	(성)서방, (손주이름)아범 또는 아버, 여보게
	사위	배우자의 아버지	장인어른, 아버님
		배우자의 어머니	장모님, 어머님
동기의 배우자	남자	형의 아내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남동생의 아내	계수씨, 계수씨
		누나의 남편	매형, 자형, 매부
		여동생의 남편	(성)서방, 매부, 매제
	여자	오빠의 아내	새언니, 언니
		남동생의 아내	올케
		언니의 남편	형부
		여동생의 남편	(성)서방, 제부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	남자	아내의 오빠	형님
		아내의 오빠의 아내	아주머니
		아내의 남동생	처남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	처남댁
		아내의 언니	처형
		아내의 언니의 남편	형님
		아내의 여동생	처제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	(성)서방, 동서
	여자	남편의 형	아주버님
		남편의 형의 아내	형님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	동서
		남편의 누나	형님
		남편의 누나의 남편	아주버님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아기씨
		남편의 여동생의 남편	서방님
사돈간	남자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	사돈어른, 사돈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	사부인
	여자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	사돈어른, 발사돈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	사부인, 사돈
	남자, 여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부모	사장어른

<그림: 가계도>



※ 직사각형은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를 나타내며, 수평 점선은 혼인관계를, 수직 실선은 혈연관계를 나타낸다.

<보 기>

- ㄱ. (이민희가 왕슬기에게) “태희가 세 살이 되더니 점점 더 예뻐지네요. 형님 어렸을 때부터 예쁘셨다더니 형님을 많이 닮았나봐요.”
- ㄴ. (김남진이 한예원에게) “요즘 지호 형님이 외국 출장을 자주 다니신다던데 아주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 ㄷ. (한예원이 왕슬기에게) “형님, 다음 주에 준규 데리고 동물원에 가려고 하는데 형님이랑 태희도 같이 가시는 게 어때요.”
- ㄹ. (김남일이 왕슬기에게) “우리 지연이 주말동안 돌봐줘서 고맙워요, 형수님.”
(왕슬기가 김남일에게) “필요, 도련님. 앞으로도 편하게 부탁하세요.”
- ㅁ. (한지희가 김남진에게) “여보게,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저녁 밥이나 먹을까 하는데 태희아비도 별일 없으면 태희 데리고 식사하러 오게나.”
- ㅂ. (왕지호가 정미연에게) “항상 사부인께서 저희 동생 부부를 보살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ㅅ. (김남진이 이민희에게) “지난 번에 가져다주신 반찬은 잘 먹었어요. 계수씨는 역시 음식 솜씨가 참 좋네요.”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ㅂ
- ③ ㄴ, ㄷ, ㅅ
- ④ ㄴ, ㄹ, ㅅ
- ⑤ ㄴ, ㅁ, 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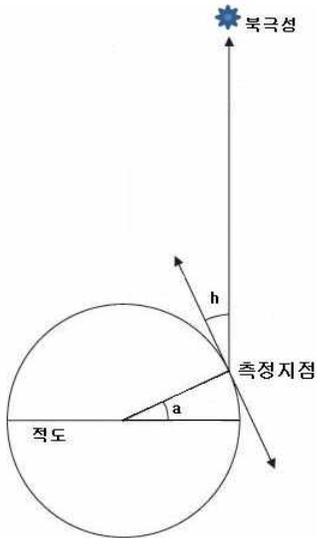
34. 다음 글과 <자료>에 근거할 때 뎀포드호의 항해경로를 <그림>에서 바르게 표시한 것은?

위도(緯度, Latitude)와 경도(經度, Longitude)는 지구상에 그려진 가상의 선으로 지구 위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하여 양 극점으로 갈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되는데 적도는 위도 0°, 북극점은 북위 90°, 남극점은 남위 90°가 된다. 경도는 위도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선으로서 기준이 되는 선(본초자오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이 0°가 되며,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80°, 서쪽으로 180° 즉 총합 360°가 된다. 지구의 자전주기는 24시간으로 24시간에 360° 자전하게 되므로 경도 15°는 1시간의 시차를 두게 된다. 예를 들어,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경 60°의 지점은 경도 0°에 비하여 4시간이 빠르고, 서경 60°의 지점은 4시간이 느리게 된다.

17세기 정확한 지도와 나침반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선장들이 항해 중에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양 한가운데에서 배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1714년 영국 정부는 항해 중에 오차범위 0.5° 이내로 정확한 경도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고 선언했다. 이에 영국의 존 해리슨은 정확한 시계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해서 항해용 크로노미터를 만들었고 결국 1773년 영국 정부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

위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측정지점에서 수평선으로부터 북극성의 각도(h)를 측정하면 그 값은 측정지점의 위도(a)와 같다. 따라서 북극성의 각도가 해당 지점의 위도가 된다.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경도의 기준선인 본초자오선과 측정지점의 시간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존 해리슨의 방법은 항해하는 배 안에 본초자오선인 영국의 그리니치 기준시를 가리키는 정확한 시계를 두고 측정지점의 정오에 그 시계가 몇시를 가리키는가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측정지점의 정오(낮 12시)에 영국의 그리니치 기준시가 오후 3시라면 측정지점은 서경 45°의 지점이라는 의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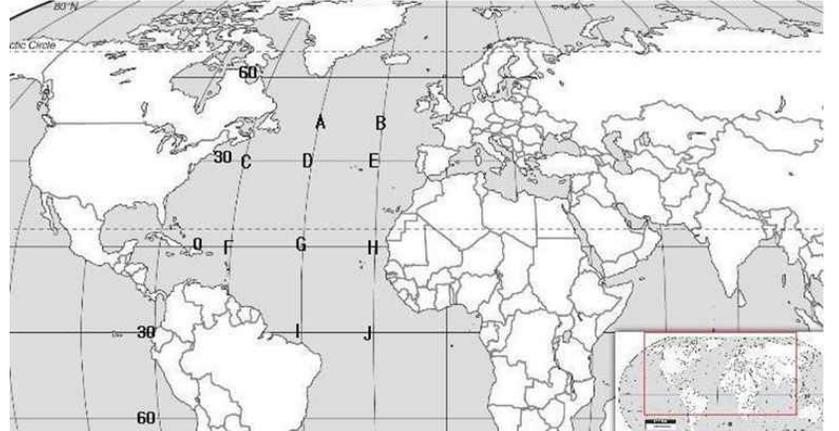
<자료: 뎀포드호의 항해>

뎀포드호에는 선장을 비롯하여 58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다. 그 중 윌리스는 일등항해사로 15년의 항해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선원이다. 뎀포드호는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항로에서 이탈하여 사흘 간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윌리스는 항로에 재진입하기 위하여 위치를 측정하였는데 측정시 기준으로 수평선과 북극성은 45°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 날 정오에 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항해용 크로노미터는 본초자오선 기준시 오후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윌리스는 현재 위치

를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선장은 항로를 변경하여 운항하였다. 그로부터 보름이 경과한 현재 위치에서 다시 위도와 경도를 관측한 결과 북극성은 수평선과 30°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 날 정오에 크로노미터는 본초자오선 기준시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림: 뎀포드호의 항해경로>

80°W 60°W 40°W 20°W 0° 20°E



* W는 서경, E는 동경을 의미한다.

- ① A → C ② A → J
- ③ B → C ④ B → D
- ⑤ B → I

35.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코끼리팀과 당나귀팀의 야구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대영 동점상황에서 당나귀팀이 9회 말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다. 투아웃 만루상황에서 볼카운트는 투스트라이크 쓰리볼이며, 타석에 들어선 A선수는 무조건 이번 투구에 방망이를 휘두르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투구를 본 후 방망이를 휘두르면 투구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에 미리 공이 직구인지 커브인지를 예측한 다음에 타격을 하기로 하였다. 직구로 예측하는 경우, 투수가 직구를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는 경우 A선수가 안타나 홈런의 득점타 확률은 6할이며, 투수가 직구를 볼 존에 던지는 경우의 득점타 확률은 2할이다. 반면 커브로 예측하는 경우라면 커브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때의 득점타 확률은 5할, 볼 존에서의 득점타 확률은 3할이 된다. 직구 혹은 커브의 예상이 빔나가는 경우라면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올 때의 안타확률은 1할이며 볼 존에서의 안타확률은 전무하다. 코끼리팀 투수가 직구와 커브를 선택할 확률은 반반이며 스트라이크 존으로 투구할 확률은 80%이다.

- * 투수는 직구 또는 커브만 구사한다.
- * 타격의 결과는 안타나 홈런의 득점타가 나오거나 혹은 헛스윙 삼진이나 범타로 인한 아웃 둘 중의 하나이다.

<보 기>

- ㄱ. 타자가 득점타를 칠 확률은 타자가 직구를 예상하든 커브를 예상하든 동일하다.
- ㄴ.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올 때 득점타가 나올 확률은 경우에 따라서 최대 24%p까지 차이가 난다.
- ㄷ. 타자의 커브예상이 맞고 투구가 볼 존으로 들어와서 득점타를 칠 확률은 커브예상이 틀리고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와서 득점타가 발생할 확률보다 낮다.
- ㄹ. 타자가 득점타를 칠 확률은 투수가 직구를 던질 때와 커브를 던질 때 5%p 차이가 난다.
- ㅁ. 타자의 직구예상이 맞는 경우 득점타가 나올 확률과 타자의 커브예상이 맞는 경우 득점타가 나올 확률은 3%p 차이가 난다.

- ① ㄱ, ㄴ ② ㄱ, ㅁ
- ③ ㄴ, ㄹ ④ ㄷ, ㄹ
- ⑤ ㄷ, ㅁ

36. 다음 글에 근거할 때 「OO 법률」에서 규정하는 ‘곤충’이 아니라고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OO 법률」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OO 법률 시행규칙」

제00조(곤충의 범위) 「OO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00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 국제동물 명명규약에 따른 곤충강(昆蟲綱)

절지동물문 대악아문의 1강(綱). 몸은 머리, 가슴, 배의 3부분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두부에는 1쌍의 촉각, 3쌍의 구기(큰턱, 작은턱, 아랫 입술) 및 1쌍의 복안(겹눈)과 통상 3개의 단안(홀눈)이 있고, 가슴에는 3체절로 3쌍의 다리와 일반적으로 2쌍의 날개가 있다. 복부는 7~13체절, 보통은 11체절로 유시곤충류의 성체에는 부속지가 없다. 기관계가 잘 발달하여 호흡은 오로지 이것에 의지하며, 혈관계는 퇴화적이다. 침샘이 있으며 중장선은 없고, 외배엽기원의 말피기관이 있다. 생식공은 몸의 후방에 있으며, 수컷에서는 제9복절에서 열리고 삼입기를 갖추고 있다. 암컷에서는 제8 또는 제9복절에서 열리고 음구편으로 둘러싸여 있다. 신경계의 집중이 현저하고, 뇌는 잘 발달하여 고차적 활동을 한다. 대부분은 난생이며 발육에는 현저한 변태를 수반하지만, 난태생인 것도 있다. 곤충류 분류에 있어 무시곤충류는 모든 점에서 원시적이고 다족류, 갑각류와 유연 관계를 나타낸다. 그 기원을 다족류의 네오테니로 하는 견해도 있다. 곤충류의 화석은 데본기부터 알려졌으며, 석탄기 등으로부터의 많은 화석종이 있다. 바닷속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서식하며, 현재 살아있는 종은 100만 종 이상이다. (후략)

<보 기>

- ㄱ. 이번에 발견한 이 생명체는 몸은 두흉부와 긴 복부로 구분되며, 두흉부는 두흉갑으로 덮여 있다. 두흉갑에는 복판에 1쌍의 큰 눈이 있고, 양옆 가장자리를 따라 2~5쌍의 작은 옆눈이 있다. 협각은 작고 집게발은 매우 크고 6마디로 되어 있다. 걷는 다리는 4쌍 있다. 복부는 7마디로 된 전복부와 5마디로 된 후복부로 구분된다. 후복부는 전복부에 비하여 좁다. 맨 끝 배마디에는 항문이 열리며, 1개의 찌름장치가 있고, 찌름장치의 기부에는 심한 독을 분비하는 독샘이 있다.
- ㄴ. 오랜 탐사 끝에 발견한 이 생명체는 몸길이 70~95mm로 몸빛깔은 녹색 또는 갈색이다. 촉각(더듬이)은 짧은데, 수컷의 것은 특히 짧다. 앞가슴이 크고 길며, 옆 가두리의 수평부는 나비가 좁고 그 치열(齒列)이 뚜렷하나 수컷의 것은 뒤 절반이 분명하지 않고 중앙 세로융기선 위에 작은 알갱이가 줄지어 있다. 배는 앞가슴보다 길다. 수컷의 비금생식관은 크기가 보통이나 뒤쪽으로 갈수록 가늘고 그 끝은 삼각형이다. 앞날개는 막질이고 꼬리 끝 뒤쪽으로 이어져 좁아지며, 앞가두리 쪽은 가늘고 녹색의 가죽질로서 불규칙한 가로맥이 있다. 뒷날개는 앞날개 끝까지 이어져 있고 뒷날개를 펼치면 밑부분을 중심으로 보랏빛을 띤 갈색의 무늬가 있다.
- ㄷ. 이 생명체는 눈으로 쉽게 발견하기 힘든 몸길이 1~2mm의 작은 동물이다. 기생 습성이 고도로 진화했는데, 어떤 종은 전적으로 식물에만 기생하는가 하면 어떤 종은 척추동물 및 무척추동물들과 복잡한 기생 관계를 맺고 있다. 형태면에서는 유사종이 머리가슴과 배 사이가 잘록하여 몸이 2부분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머리·가슴·배가 구분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또한 유충 기간 동안에는 3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 ㄹ. 물속에서 발견한 이 생명체는 몸길이가 35~40mm이다. 몸은 납적한 타원형이며 몸빛깔은 검은색인데 초록색을 띤다. 수컷의 등면은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있으며, 암컷의 등면에는 매우 가늘고 짧은 줄 모양의 홈이 파여 있어 거칠다. 앞머리 양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다. 앞머리의 양쪽 끝과 머리방패, 촉각(더듬이), 양쪽 수염은 황갈색이다. 배는 대부분이 황갈색이고 앞가슴돌기·뒷가슴조각·뒷밑마디내판은 흑록색이다. 다리는 대부분이 황갈색이고 가운데와 뒷발목마디는 흑갈색이다. 앞다리와 가운데다리는 길지 않으며 뒷다리는 길고 굵다. 다리에는 털이 있으며 특히 뒷다리에 털이 많기 때문에 다리를 뒤쪽으로 뻗으면 추진력이 커진다.
- ㅁ. 이 생명체는 몸길이가 30~35mm이다. 몸 빛깔은 황갈색 또는 흑갈색이며, 짧고 부드러운 가는 털이 덮고 있다. 머리는 원뿔형에 가깝고 검은색을 띤다. 홀눈은 큰 타원형이고 겹눈은 비교적 작은 알 모양으로 앞쪽으로 튀어나왔다. 앞가슴은 뒤쪽이 나비가 넓다. 앞가두리는 약간 안쪽으로 구부러졌으며, 뒷가두리는 뚜렷하게 둥글고 중앙의 오목한 부분은 가늘고 길며 앞가슴배판의 솟아오른 부분은 좌우가 서로 맞닿아 있다. 뒷가슴배판의 뒷가두리는 둔각(鈍角)이고 옆조각은 그 안가두리 밑이 서로 가까이 있으며 뒷모는 직각에 가깝다. 배는 비교적 길고 등면 끝 2마디에는 양쪽에서 안쪽으로 향하는 센털뿔치가 있다. 대체로 땅굴생활을 하지만 땅 위로 나가기도 한다. 잡식성으로 식물의 뿌리나 지렁이 등을 먹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나, 르, 口

39.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안정된 일자리에 재취업(창업)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구직급여 과잉지급과 구직급여지급에 따른 구직의욕저하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다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할 때 <보기>의 5명(갑, 을, 병, 정, 무)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사람은? (단, <보기>의 5명은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 1.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재취직한 때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 2. 장애인인 경우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보 기> —

- 갑: 이직일 당시 연령이 35세이고 피보험기간은 3년이며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이다. 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
- 을: 이직일 당시 연령이 27세이고 피보험기간은 1년 6개월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만원이다. 9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 단, 을은 청각장애인이다.
- 병: 이직일 당시 연령이 50세이고 피보험기간은 8년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만 5천원이다.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다.
- 정: 이직일 당시 연령이 58세이고 피보험기간은 5년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만 2천원이다.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다.
- 무: 이직일 당시 연령이 25세이고 피보험기간은 2년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만원이다. 3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40. 다음의 <예시>를 읽고 <상황>에 대하여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예 시> —

갑은 을과 짜고 갑의 소유인 금송아지를 을에게 판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고 을에게 금송아지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을이 약속을 어기고 이 금송아지를 병에게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갑은 병을 상대로 금송아지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갑과 을이 짜고 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금송아지는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병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그런 사정을 몰랐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유효라고 하고 있다.

제00조 ① 상대방과 짜고 체결한 허위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그런 사정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이다.

소송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률내용을 구성하는 사실은 그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한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짜고 한 허위계약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갑에게 있고, 병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병에게 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짜고 한 허위계약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갑은 패소하고 병이 승소한다. 짜고 한 허위계약이라는 점은 증명되었는데, 병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병이 패소하고 갑은 승소한다. 즉 증명이 되지 않아 법관이 어느 쪽이 사실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증명책임이 있는 쪽이 패소한다.

— <상 황> —

A는 X아파트의 소유자인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B는 X아파트에 세를 든 사람으로 차임은 매년 1월에 2,00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A는 2009년 이후 계속 부동산 중개사인 C와 관리계약을 맺고 C를 대리인으로 삼아 B로부터 차임을 받아서 자기에게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12월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대리권도 박탈하였다. 그러나 C는 2013년 1월 자신이 여전히 A의 대리인인 양 B로부터 차임 2,000만원을 받아서 도주하였고, A는 B를 상대로 2013년 1월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 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B는 C의 대리권이 소멸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 제00조 ① 대리권이 소멸된 자에게 한 변제는 무효이다. ② 대리권이 소멸된 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변제한 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변제는 유효하다. ③ 변제한 자가 대리권의 소멸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랐던 점에 과실이 있으면 그 변제는 무효이다.

— <보 기> —

- ㄱ. A는 C가 차임을 받아갈 때 B가 C의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알면서도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한다.
- ㄴ. 법관이 C가 차임을 받아갈 때 B가 C의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몰랐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A가 승소한다.
- ㄷ. C가 차임을 받아갈 때 B가 C의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몰랐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A는 B가 그 사실을 몰랐던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관이 B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A가 승소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